

군산시 공고 제2021-2011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사업 대상선정 평가기준 및 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투명성 확보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준 조정 (안 제8조, 별표 제1호)
 - 20세대 이상 동이 다수인 경우 동당 600만원, 최대 5,000만원 이하 지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입주민 동의 수 변경 (안 제11조, 별지 제4호)
 - 구분소유자 동의 3/4 이상 → 2/3 이상
- 사업자 선정방법 신설 (안 제13조의2)
 -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서 사업자 선정 대행가능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 조정 (안 별표 제3호)
 -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 세분화 및 배점 조정
- 일부 단어 적합하게 정비 (안 제8조, 제10조)

3. 의견제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주택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전화 : 063-454-4763, FAX : 063-452-8828)

- 전자우편 : tjscjf1324@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전화 063-454-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참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세대 이상의 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동당 6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과 별표1에 의한 전체 세대수에 따른 지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건설하는**”을 “**건설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2/3 또는 3/4 이상**”을 “**2/3이상**”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업자 선정방법)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총사업비(자부담 포함)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다만, 2회(재공고)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호 중 “**인감증명서 포함**”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2/3또는 3/4이상**”을 “**2/3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 관리비용 세대수별 지원기준

(제8조 제3항 관련)

(단위:천원)

세 대 수	지원액 (상한액)
300세대 이상	30,000
100세대 ~ 299세대	27,000
20세대 ~ 99세대	24,000
19세대 이하	세대당 1,200

* 비고

20세대 이상의 동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가능
(동당 6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과 전체 세대수에 따른 지원액 중 큰 금액)

※ 주택단지의 구분은 건축물대장(도로명주소)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 (제12조 제1항 관련)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점	
① 최근 지원 경과년수 (지원년도 기준)	11년 초과	20점	정량평가 (80점)
	11년	16점	
	10년	13점	
	9년	9점	
	8년	5점	
	7년	2점	
	6년	0점	
② 준 공 후 경과월수	40년 이상	20점	
	:	:	
	15년	7.5점	
	산식 : $\frac{\text{경과월수}}{12\text{개월}} \times 0.5\text{점}$		
③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100%	20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75% 이상	18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60% 이상	16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45% 이상	14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30% 이상	12점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30% 미만	10점	
④ 보조금 지원횟수	최초 지원	20점	
	1회 지원	15점	
	2회 지원	10점	
	3회 지원	5점	
	4회 이상 지원	0점	
⑤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주민수혜도 등)		20점	정성평가 (20점)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⑤④①②③의 항목순에 따른 고득점으로 한다.

비고

1. 평가결과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각종 안전점검 등에 따라 긴박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원이력에 관계 없이 지적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이력에 포함한다.
2. 정비계획수립신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②항의 배점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구한다.
4. 지원대상 결정 후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5. ①항 최근 지원 경과년수 및 ④항 지원횟수는 2006년 이후 지원 금액에 관계없이 당해사업(도비 지원사업 포함)으로 지원된 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건축법에 따라 준공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매년 해당사업 예산의 30%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정산서

- 보조사업명 :
- 사업명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 사업비 : 총 원
- 사업내용 :
- 정산내역

[단위 : 원]

단지명 및 대표자	사업비			보조금 반납액
	합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단지명]

[대표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공사업체 통장사본 등 각1부
2. 공사완료확인서 (준공의결서 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등),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전·중·후 사진첩 등 각1부
3. 정산내역관련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자부담이체증, 내역서 등), 하자보수보증증권 등 각1부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락처	
	주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원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계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군산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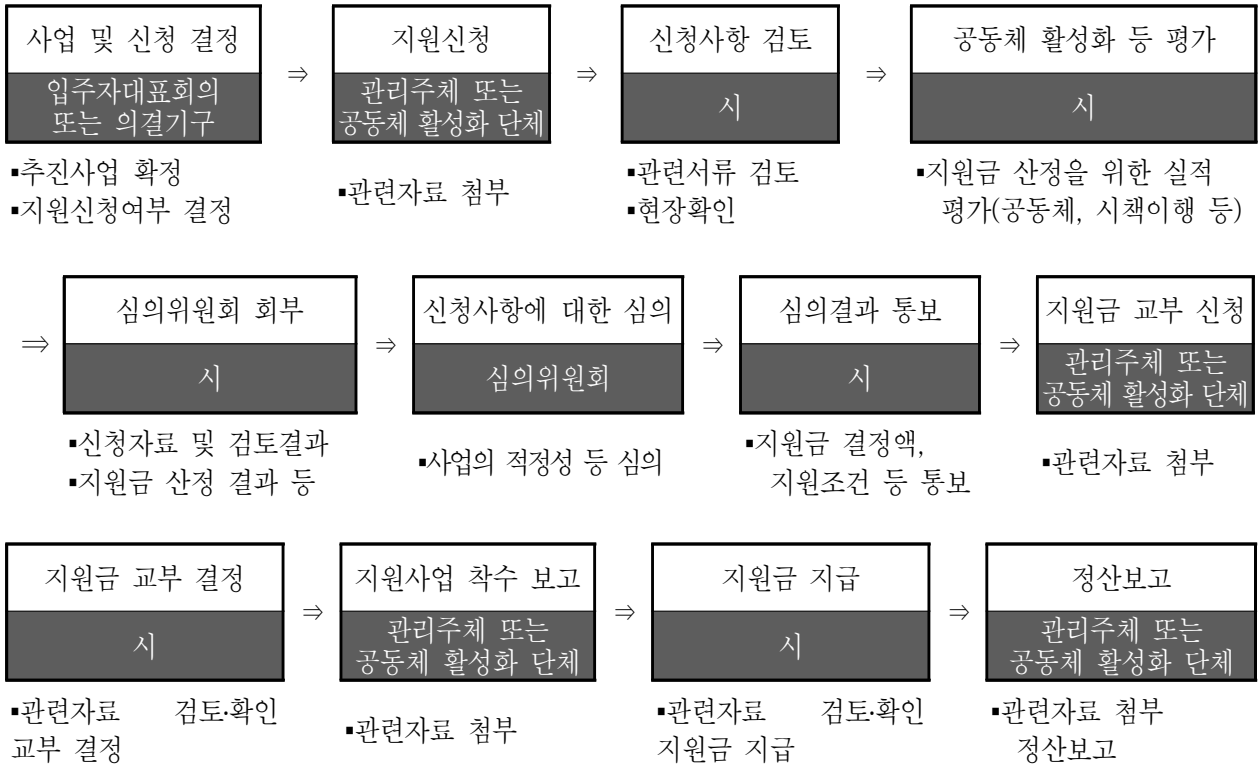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뒷면)

□ 처리절차



지원 제외대상

- 가.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 나.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 다.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사업
- 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마. 그 밖에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단, 한국토지주
택공사(또는 지방공사) 및 민간이 건
설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③ (생 략)

제11조(지원 사업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자 하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관리 비
용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
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사업을 신
청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1부(입주
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
주택의 경우는 입주자의 2/3 또는 3/
4 이상 동의서)

2. (생 략)

③ (생 략)

<신 설>

----- 건설한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 사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2/3이상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사업자 선정방법) 관리주체는
제8조에 따라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사업을 시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
정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군산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2회(재공고) 유찰시에는 수의계
약을 할 수 있다.

군산시 공고 제2021-1833호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
- 나. 공영차고지의 이용신청, 이용료, 행위제한 등
- 다. 관리 및 운영의 위탁(민간위탁운영·위탁해지 등)

3. 의견제출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 063-454-4322, FAX : 063-454-6035)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계(063-454-4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 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공영차고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시장에 납부하는 일정액의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제2장 공영차고지의 이용

제3조(이용신청)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최대적재량 1.5톤 이상(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만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 시 별지2호 서식에 따른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이용료의 전액 또는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전액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위약금과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 사용대금은 일할 계산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이용 취소 또는 정지)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권한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3장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제10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4.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 ②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③ 위·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 1부
4. 법인(단체)정관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 1부
7.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2조(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수탁관리 협약의 체결) 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관리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사용료) ① 사용료 요율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제 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② 제1항의 해당연도 재산 평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축의 경우 시설투자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연간 사용료를 매년 일시에 납부해야 하며, 공영차고지 사용 개시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단 연 2백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위탁재산의 관리현황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영차고지 사용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9조(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수탁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기간 내에서 해야 한다.

제20조(위탁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공영차고지 운영 위탁 및 시설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

(단위: 원)

톤수	1일 요금	월 정기권	차고지(1년)	비고
1.5톤 이상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4,000	20,000	220,000	
트레일러 (견인+피견인)	6,000	30,000	330,000	

(비고)

1. 이 주차요금 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적용된다.
2. 「군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한다.
3. 차량의 구분은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4. 1일 주차는 차량이 공영차고지에 들어온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4시간 초과 시마다 1일 요금을 추가 납부한다.
5. 정기권 및 차고지 이용자에 한하여 화물차량 1대당 등록 승용차 1대의 요금을 면제한다.
6.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이용료는 차고지 이용요금에 포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차량현황	차량번호		색 상		
	차 종		세부용도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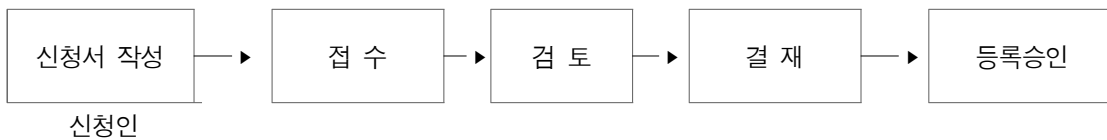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

처리 절차



[별지 제2호 서식]

군산시 제 호

차 고 지 이 용 증 명 서

- 성명(법인) :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
- 차량번호 :
- 이용면적 :
- 이용기간 :
- 차 고 지 :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자

군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연락처	(063) 454 - 4322

군산시 고시 제2021-144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8.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21건, 폐지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1. 10.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역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 북동 2693-1	전라북도 군산시 미 성로 286 (산북동)	20211006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 장동 526-2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로 314 (미장동)	20211006		20100125	수송택지의 중심도로로 수 송동에서 인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 룡동 377-1, 377-2	전라북도 군산시 미 제4길 9 (미룡동)	20211005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 면 증석리 112-6, 1174	전라북도 군산시 회 현면 남군산로 339	20211005		20100125	새만금 발전에 대비한 남군 산의 대동맥 도로를 의미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조 촌2길 4 (조촌동)		20211005	건물번호 폐지 후에 건물신축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 명 부여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 구읍 옥구동로 98		20211005	건물번호 폐지 후에 건물신축	20100125	옥구읍 동쪽에 위치한 도로, 상평리,이곡리, 수산리통과도로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야미도4길 56		20211005	건물번호 폐지 후에 건물신축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야미도리 123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야미도4길 60	20211005	건물증축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야미도리 123	전라북도 군산시 옥 도면 야미도4길 56	20211005	건물신축	20090508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88-7, 288-4, 288-6, 310-2, 310-10, 310-20, 310-38, 310-41	전라북도 군산시 성 산면 동군산로 46	20211001		20100125	군산시 동쪽을 관통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오 식도동 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산단3로 347(오식도동)	20211001		20160325	새만금산업단지의 약어를 서수식으로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 구읍 아곡리 567	전라북도 군산시 옥 구읍 옥구동로 98	20211005	건물신축	20100125	옥구읍 동쪽에 위치한 도로, 상평리,이곡리, 수산리통과도로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 동 2-31, 5-3, 41-24	전라북도 군산시 궁 포1로 79 (조촌동)	20211001	건물신축	20180109	활처럼 휘어져 흐르는 나 루터가 있던 옛지명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 촌동 2-31	전라북도 군산시 궁 포2로 80 (조촌동)	20211001	건물신축	20180109	활처럼 휘어져 흐르는 나 루터가 있던 옛지명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 촌동 2-31	전라북도 군산시 궁 포1로 81 (조촌동)	20211001	건물신축	20180109	활처럼 휘어져 흐르는 나 루터가 있던 옛지명	
건물번호 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해 칠길 117-2 (산북동)		20210929	건물번호 폐지 후에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 서면 선연리 298-2	전라북도 군산시 옥 서면 선연길 12	20210928		20070528	옥서면 소재 관통도로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 북동 3131-1	전라북도 군산시 해 칠길 117-2 (산북동)	20210929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 촌동 753-4, 753-5	전라북도 군산시 검 다메1길 14 (조촌동)	20210928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 산면 남내리 611-2	전라북도 군산시 옥 산면 대위로 132	20210925	건물신축	20100125	회현면 대위제 옆을 지나가 는 도로로 지역명칭 인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 장동 497-1	전라북도 군산시 미 장안5길 12 (미장동)	20210925	건물신축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오 식도동 813-36	전라북도 군산시 외 항로 885 (오식도동)	20210927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동 868-1	전라북도 군산시 수 송안7길 25 (수송동)	20210924	건물신축	20100125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비 응도동 83-6	전라북도 군산시 비 응로 43 (비응도동)	20210924	건물신축	20100125	섬 이름 사용	
건물번호 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산 북동 2649-1	전라북도 군산시 금 성길 101 (산북동)	20210924	건물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군산시 고시 제2021-146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07.

군 산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칭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31번지 일원
- 구역면적 : 37,173.60㎡

3.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성 명 : 나운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기남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78-2, 2층 (나운동)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 2021.10.06.

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 없음)

- (1) 대지면적 : 33,601.0000㎡
- (2) 건축면적 : 7,156.3901㎡
- (3) 연 면 적 : 135,162.5780㎡
- (4) 건 폐 율 : 21.2981%
- (5) 용 적 률 : 269.8671%

(6)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7)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16~26층, 아파트 10동 993세대의 부대복리시설

구분	TYPE	세대수	공 급 면 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조합 및 분양 주택	59A	390	59.7894	20.7243	80.5137	29.7545
	59B	176	59.9654	20.6418	80.6072	29.7890
	73	266	73.4280	24.9219	98.3499	36.3460
	84A	134	84.9912	27.4087	112.3999	41.5383
	84B	21	84.9241	28.4874	113.4115	41.9121
	84C	6	84.9220	30.3833	115.3053	42.6120
근린생활시설 (상가 2동)		건물규모 지하1, 지상1층		연면적 1,544.2195		383.8882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변경)

1) 공동주택(변경)

구분	세대수		60㎡미만				85㎡미만								
			59A		59B		73		84A		84B		84C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조합원	일반	589	519	204	173	94	86	180	160	96	85	15	15		
	해경	5	5	4	4							1	1		
일반	392	462	178	209	82	90	86	106	36	47	4	4	6	6	
보류지	7	7	4	4					2	2	1	1			
계	993	993	390	390	176	176	266	266	134	134	21	21	6	6	

※ 상기 세대별 분양세대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결과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2) 근린생활시설(변경 없음)

동명칭	분 양 면 적	비 고
1동	618.64㎡	
2동	925.58㎡	
합계	1,544.22㎡	

※ 상가 일반분양 수익금은 상가 조합원의 종전소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분양수익금으로 하며, 상가조합원의 분양 희망에 따라 1동은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2동은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한다.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변경 없음)

1)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종류	명칭	폭원(M)	연장(M)	면적(m ²)	비고
총계			3,572.60		
소계			3,123.80		
도로	중로 1-74	3~12	689	1,403.80	기존도로 확폭
도로	소로 1-313	2	235	454.70	기존도로 확폭
도로	소로 1-314	2	160	320.40	기존도로 확폭
도로	도로	3	169	495.90	기존도로 확폭
도로	도로	3	78	204.00	가감속차로 신설
도로	도로	3	92	245.00	가감속차로 신설
소계			448.80		
지구대	경찰관파출소		448.80		

2)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종류	명칭	면적(m ²)	비고
경찰청	나운지구대	408.80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변경 없음)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3개월 (2016년 2월 ~)

6. 기타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사항과 관련한 자료는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3712) 및 조합사무실(063-461-2563)에 비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1-1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7.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승인 2021-00002호 (2021. 09. 30.)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장(수도과)
- ③ 허가목적 : 어청도 식수원 개발사업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 1(포락지)
- ⑤ 면 적 : 5.9m²
- ⑥ 허가기간 : 2021. 09. 30. ~ 2050. 09. 30.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1-148호

어청도 마을상수도 인가 고시

어청도 마을상수도를 『수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 하고 같은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0. 15.

군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어청도 식수원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군산시장(군산시 시청로 17, 수도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어청도 지역주민의 식수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사업
- 개 요 : 정수장 200톤/일 신설, 해수담수화 200톤/일 증설, 해수취수 1식, 계량기 교체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5.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 급수인구 : 740명
- 급 수 량 : 해수담수화(RO) 200m³/일, 정수장(MF) 200m³/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 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2년
- 급수예정일 : 2022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게재실음 생략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15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군산시 산북동 335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산북동 3350 일원(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나. 명 칭 : 서군산 체육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부지면적 : 34,795m²
 -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5,181.65m², 연면적 7,568.49m²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가.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성 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당초 : 인가고시일 ~ 2023. 12. 31.
 - 2) 변경
 - 1단계 : 축구장 (인가고시일 ~ 2021. 12. 31.)
 - 2단계 : 복합체육센터 (인가고시일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 실음생략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15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0. 13.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1. 시 행 자 : 군산시청 수산진흥과
2.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3. 공사내용 : 수산물 육성을 위한 자연석시설
4. 공사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39(방축도) 인근 공유수면
5. 공사면적 : 3,324㎡
6. 공사기간 : 2021.10.13. ~ 2021.12.07.

군산시 공고 제2021-1929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5.

군 산 시 장



- 1. 신조공인등록 연월일 : 2021. 10. 5.
-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21. 10. 5.
- 3. 신조등록공인 및 인영(1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신 조	군산시장의인 세무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우레탄	인증기 교체	시민 납세과

-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1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폐기사유	관리부서
폐 기	군산시장의인 세무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3.0*3.0		황동	인증기 교체	시민 납세과

군산시 공고 제2021-1944호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

『옥산면 청암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7.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2. 공사명 및 사업구간

사업명	사업구간	규 모	사업기간
옥산면 청암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685번지 일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L=160m, B=9m	2021 ~ 2022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1. 10. 7. ~ 2021. 10. 22.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건설과(☎ 063-454-3583)

※ 토지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 비치

5. 보상시기 : 2021년 10월 경 보상협의 예정(구체적 사항과 협의 방법은 추후 개별통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 나.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7.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요청하여야 함.

8. 시·도시사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9. 기 타 사 항

-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의 견 서

『 옥산면 청암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 10.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전라북도 군산시장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입용지조서집계표

구 분	합 계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비고
	필지수	면 적 (M2)	필지수	면 적 (M2)	필지수	면 적 (M2)	필지수	면 적 (M2)	
답	4	83	-	-	3	45	1	38	5.22
임 야	1	71	-	-	1	71	-	-	4.47
도 로	5	439	1	148	4	291	-	-	27.63
유	3	313	-	-	3	313	-	-	19.70
구 거	1	683	-	-	1	683	-	-	42.98
계	14	1,589	1	148	12	1,403	1	38	100

편입용지조서

순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면적 (M2)	편입 면적 (M2)	토 지 대 장 소 유 자	
	시	면	리					주 소	성 명
1	군산	옥산	옥산	683	답	2,371	3		군산시
2	"	"	"	677	도	363	26		군산시
3	"	"	"	818-7	도	4,896	148		국 (농림축산식품부)
4	"	"	"	산262	도	397	249		군산시
5	"	"	"	산261-4	임	75	71		군산시
6	"	"	"	776	도	10	10		군산시
7	"	"	"	772	도	205	6		군산시
8	"	"	"	779	유	239	128		군산시
9	"	"	"	777	유	221	182		군산시
10	"	"	"	781	유	138	3		군산시
11	"	"	"	756	구	1,170	683		군산시
12	"	"	"	758	답	1,321	38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477번길 3	김재국 외 1인
13	"	"	"	760-1	답	22	11		군산시
14	"	"	"	758-1	답	233	31		군산시
총 계						11,661	1,589		

군산시 공고 제2021-1971호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

『옥구 리도 209호 (신장~다기)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8.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2. 공사명 및 사업구간

사업명	사업구간	규모	사업기간
옥구 리도 209호 (신장~다기) 도로확포장공사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237-8 ~ 오곡리 538	농어촌도로 확포장 L=1.10km, B=6.5m,	2021 ~ 2024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토지조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1. 10. 12. ~ 2021. 10. 26.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군산시 건설과(☎ 063-454-3582)

※ 토지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 비치

5. 보상시기 : 2021년 11월 경 보상협의 예정(구체적 사항과 협의 방법은 추후 개별통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7.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요청하여야 함.

8. 시·도시사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9. 기 타 사 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시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군산	옥구	오곡	237-8	도	724	57	군산시				
2	군산	옥구	오곡	237-1	도	357	35	군산시				
3	군산	옥구	오곡	228-1	도	2,608	2	군산시				
4	군산	옥구	오곡	230-4	도	5	5	전*문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5	군산	옥구	오곡	237-7	도	36	36	전*문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6	군산	옥구	오곡	230-2	도	48	27	전*문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7	군산	옥구	오곡	230-5	답	35	2	전*동	군산시 나운동 161 나운청솔 아파트			
8	군산	옥구	오곡	237-4	답	558	115	전*동	군산시 나운동 161 나운청솔 아파트			
9	군산	옥구	오곡	238-1	전	1,613	66	전*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10	군산	옥구	오곡	238-2	도	60	56	군산시				
11	군산	옥구	오곡	236	답	423	71	전*현	군산시 옥구읍 오곡길			
12	군산	옥구	오곡	526	도	4,489	259	국 (농수산부)				
13	군산	옥구	오곡	235-4	전	73	68	김*순	군산시 옥구읍 다기길			
14	군산	옥구	오곡	235-3	도	77	44	김*순	군산시 옥구읍 다기길			
15	군산	옥구	오곡	235-2	답	354	88	전*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16	군산	옥구	오곡	233-3	답	130	43	전*권 외 1인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17	군산	옥구	오곡	233-2	도	49	33	담양전씨 통정대부이수 공파종중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18	군산	옥구	오곡	359-1	답	4,301	550	담양전씨 창우공파 종중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19	군산	옥구	오곡	319-1	답	3,229	225	전*동	군산시 옥구읍 다기길	옥구농업 협동조합	옥구읍 선제리 509-7	근저당 권설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시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군산	옥구	오곡	322-1	답	2,364	397	전*동	군산시 나운동 161 나운청솔 아파트	옥구농업 협동조합	옥구읍 선제리 509-7	근저당 권설정
21	군산	옥구	오곡	528	구	1,111	277	국 (농수산부)				
22	군산	옥구	오곡	529	도	2,592	1387	국 (농수산부)				
23	군산	옥구	오곡	323	답	278	22	전*기 외 1인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24	군산	옥구	오곡	355	답	2,519	76	전*동	군산시 나운동 161 나운청솔 아파트	옥구농업 협동조합	옥구읍 선제리 509-7	근저당 권설정
25	군산	옥구	오곡	331	답	1,643	284	김*수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26	군산	옥구	오곡	327-1	답	1,180	9	채*석	군산시 옥구읍 다기길	옥구농업 협동조합	옥구읍 선제리 509-7	근저당 권설정
27	군산	옥구	오곡	328	대	1,048	2	양*환	군산시 진포안3길			
28	군산	옥구	오곡	330-3	대	35	35	한*봉	군산시 나운3길9,			
29	군산	옥구	오곡	330	대	534	65	한*봉	군산시 나운3길9,			
30	군산	옥구	오곡	332	전	1,121	15	전*근	군산시 문화동			
31	군산	옥구	오곡	330-2	대	149	50	전*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32	군산	옥구	오곡	333	전	1,269	21	전*선 외 1인	군산시 나운동 489 극호타운 아파트			
33	군산	옥구	오곡	330-1	전	1,488	208	전*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34	군산	옥구	오곡	산133-1	임	9,917	22	전*병	서울 강동구 잠실동 27번지 아파트			
35	군산	옥구	오곡	산130-1	임	793	467	전*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17 사당우성 아파트			
36	군산	옥구	오곡	334-2	전	684	7	전*병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17 사당우성 아파트			
37	군산	옥구	오곡	산130-2	임	12,793	379	전*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17 사당우성 아파트			
38	군산	옥구	오곡	334	전	853	128	문*덕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39	군산	옥구	오곡	334-1	전	496	54	두*경 외 5인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시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0	군산	옥구	오곡	산147	임	298	6	전*근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41	군산	옥구	오곡	산145	임	816	76	전*주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42	군산	옥구	오곡	산154-1	임	11,207	412	두릉두씨 대종중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43	군산	옥구	오곡	448-1	전	1,213	518	두릉두씨 대종중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44	군산	옥구	오곡	448	대	655	38	두릉두씨 대종중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45	군산	옥구	오곡	산151	임	3,967	899	전*택 외 2인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46	군산	옥구	오곡	산152-2	임	331	22	강*임	광주 남구 송하동43-28 금호타운			
47	군산	옥구	오곡	455-4	임	1,373	42	한*자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70,	남군산재 마을금고	군산시 미룡동 30	근저당 권설정
48	군산	옥구	오곡	454	대	466	5	김*진	시흥시 죽율로 36			
49	군산	옥구	오곡	458	답	345	38	전*년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옥구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37	근저당 권설정
50	군산	옥구	오곡	531	구	2,967	1354	국(농수산 부)				
51	군산	옥구	오곡	459	답	2,321	196	최*규 외 1인	김제시 백구면 공술1길	농협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 권설정
52	군산	옥구	오곡	456	전	793	74	김*수	군산시 문화동 912-18			
53	군산	옥구	오곡	475	답	1,074	14	최*규 외 1인	김제시 백구면 공술1길	농협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 권설정
54	군산	옥구	오곡	532	도	1,818	294	국(농수산 부)				
55	군산	옥구	오곡	453-5	전	1,468	41	류*기	군산시 옥구읍 신장길 82			
56	군산	옥구	오곡	476	답	2,387	7	박*운	군산시 수동동로20	군산농업 협동조합	군산시번영로 162	근저당 권설정
57	군산	옥구	오곡	483-2	유	7,877	239	국 (농수산부)				
58	군산	옥구	오곡	440-10	도	301	25	전*주 외 2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강북새마 을금고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45	근저당 권설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시	읍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9	군산	옥구	오곡	435	대	300	25	최*진	군산시 옥구읍 신장길	옥구농업 협동조합	옥구읍 옥구로 37	근저당 권설정
										신용자	군산시 한밭3길 10, 다동 304호	근저당 권설정
60	군산	옥구	오곡	435-1	전	173	173	최*진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61	군산	옥구	오곡	436-1	전	446	162	백*숙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강북새마 을금고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45	근저당 권설정
62	군산	옥구	오곡	436-2	제	40	2	백*숙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강북새마 을금고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45	근저당 권설정
63	군산	옥구	오곡	434-2	제	126	37	전*봉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64	군산	옥구	오곡	434-1	대	231	71	전*봉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65	군산	옥구	오곡	434-3	전	519	162	전*봉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66	군산	옥구	오곡	440-13	임	7,087	492	문*춘	군산시 옥구읍 영병산길			
67	군산	옥구	오곡	349-8	임	15,694	123	주식회사 현영	익산시 선화로5길 45.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권/지상 권설정
										김종윤	전주시 덕진구 인덕원로 251, 106동 1203호	근저당 권설정
68	군산	옥구	오곡	산139	임	992	433	주식회사 현영	익산시 선화로5길 45.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근저당 권/지상 권설정
										김종윤	전주시 덕진구 인덕원로 251, 106동 1203호	근저당 권설정
69	군산	옥구	오곡	433	유	526	87	군산시				
70	군산	옥구	오곡	432-1	답	4,231	31	홍*석 외 1인	군산시 나운동 803-2 동월연립주택			
71	군산	옥구	오곡	428-10	창	280	6	차*련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72	군산	옥구	오곡	428-9	도	37	11	군산시				
73	군산	옥구	오곡	538	도	4,635	40	국 (농수산부)				

의 견 서

『 옥구 리도 209호 (신장~다기) 도로확포장공사 』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1-1971호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

『회현 리도 212,213호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8.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2. 공사명 및 사업구간

사업명	사업구간	규모	사업기간
회현 리도212,213호 도로확포장공사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345-2 ~ 회현면 학당리 1758	농어촌도로 확포장 L=1.4km, B=6.5m	2021 ~ 2024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토지조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1. 10. 12 . ~ 2021. 10. 26.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군산시 건설과(☎ 063-454-3582)

※ 토지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 비치

5. 보상시기 : 2021년 11월 경 보상협의 예정(구체적 사항과 협의 방법은 추후 개별통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7.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요청하여야 함.

8. 시·도시사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9. 기 타 사 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연번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군산시 회현면											
1	금광리	345-2	도	380	96		미등록				
2	금광리	345-5	도	148	17						
3	금광리	345-6	답	250	42						
4	금광리	345-3	도	10	10		미등록				
5	금광리	345-4	도	43	43	두*호	회현면 금광리				
6	금광리	1256	도	13729	302	국 (농수산부)					
7	금광리	345-7	답	658	94	이*연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8	금광리	352-4	도	46	46	두*호	회현면 금광리				
9	금광리	352-3	도	60	1	두*호	회현면 금광리				
10	금광리	352-1	대	1805	83	명의인 없음	명의인 없음				
11	금광리	352-5	전	238	19	*	미등록				
12	금광리	351-2	도	7	2	두*호	회현면 금광리				
13	금광리	351-1	대	278	3	강*자	군산시 회현면 전중길				
14	금광리	350	전	694	21	강*자	군산시 회현면 전중길				
15	금광리	224-2	도	106	21	송종남					
16	금광리	224-5	도	133	24						
17	금광리	224-3	도	23	23	두*호	회현면 금광리				
18	금광리	224-1	답	449	10	두*균	군산시 회현면 회현금광길	군산원예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수송동 24-13	근저당설정 지상권설정	
19	금광리	348-5	전	165	43	*	미등록				
20	금광리	348-2	도	102	102	국 (농수산부)					
21	금광리	348-3	도	46	46	국 (농수산부)					

연번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금광리	348-6	대	265	6	이*경	회현면 금광리				
23	금광리	348-1	대	582	88	문*숙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24	금광리	349-2	도	13	13	신*목	회현면 학당리				
25	학당리	1218-15	도	8519	1,440.00	국 (건설부)					
26	학당리	1161-5	전	170	14	군산시					
27	학당리	1161-2	전	802	50	신*식	서울 동작구 대방동2-1				
28	학당리	1163-1	임	5342	495	신*수외2인	회현면 학당리				
29	학당리	1161-4	도	7	7	군산시					
30	학당리	1163-3	도	7	7	신*수외2인	회현면 학당리				
31	학당리	1167-7	도	145	75	왕*자	군산시 회현면 원학당길 52				
32	학당리	1167-6	도	132	83	송*갑	옥구군 회현면 학당리				
33	학당리	1166-4	도	96	11	군산시					
34	학당리	1163-2	도	26	26	신*수외2인	회현면 학당리				
35	학당리	1166-2	도	89	54	신*철	회현면 학당리				
36	학당리	1166-8	도	36	36	채*녀	이리시 남중동				
37	학당리	1166-1	대	172	83	김*곤	회현면 학당리				
38	학당리	1165-7	도	13	12	송*갑	회현면 학당리				
39	학당리	1165-10	도	7	7	군산시					
40	학당리	1165-5	도	73	73	왕*자	군산시 회현면 원학당길 52				
41	학당리	1165-6	도	30	3	송*갑	회현면 학당리				
42	학당리	1170-2	도	73	70	신*복	회현면 학당리				
43	학당리	1170-3	도	136	93	군산시					
44	학당리	1165-8	도	36	36	왕*자	군산시 회현면 원학당길				

연번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5	학당리	1170-1	대	1035	122	김*희외1인	군산시 미장안길				
46	학당리	1165-2	전	228	63	왕*자	군산시 회현면 원학당길	김봉근	군산시 회현면 원학당길 52	근저당설정	
47	학당리	1165-4	전	446	213	최*영	군산시 나운동 155 나운세경아파트				
48	학당리	1165-9	도	10	10	왕*자	군산시 회현면 원학당길				
49	학당리	1165-1	전	350	217	임*용	군산시 월명1길 3	군산오룡신용 협동조합	군산시 오룡동 942-6	근저당설정 지상권설정	
50	학당리	1164-1	전	1365	144	임*용	군산시 월명1길 3	군산오룡신용 협동조합	군산시 오룡동 942-6	근저당설정 지상권설정	
51	학당리	1164-4	도	132	129	송*갑	회현면 학당리				
52	학당리	1158-1	답	2671	726	박*윤외1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45	이서농업협동 조합	완주군 이서면 이서로 60	근저당권설정	
53	학당리	1158-3	도	192	186	신*섭	군산시 명산동				
54	학당리	1172-1	임	1256	2	조*엽외1인	경남 마산시 자산동 329-1 한우2동				
55	학당리	1172-2	도	3	2	신*술	회현면 학당리				
56	학당리	1173-1	대	400	1	신*의	회현면 학당리	회현농업협동 조합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63	근저당권설정	
57	학당리	1173-2	도	17	15	신*익	회현면 학당리				
58	학당리	1174-3	도	7	4	군산시					
59	학당리	1174-2	도	10	8	신*복	회현면 학당리				
60	학당리	1175-2	도	79	68	신*섭	익산시 인북로				
61	학당리	1175-1	답	2658	201	김*식외3인	군산시 회현면 원학당길				
62	학당리	1751	구	669	67						
63	학당리	1157-7	도	7	7	신*구	김제군 만경면 장산리				
64	학당리	1601	답	3165	5	신*섭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익산농협협동 조합	익산시 평동로 698	근저당권설정	
65	학당리	1600	답	3774	9	윤*자	군산시 하나운로 45	군산원예농업 협동조합	군산시 수송동 24-13	근저당권설정	
66	학당리	1158-2	도	73	29	신*섭	김제군 만경면 장산리	김제군농업협 총조합	김제군 김제읍 요촌리 106-1	근저당권설정	
67	학당리	1150-3	도	23	18	신*철	회현면 학당리				

연번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8	학당리	1150-5	도	23	20	군산시					
69	학당리	1150-1	전	450	34	신*정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12번길 26				
70	학당리	1151	대	588	226	김*자	군산시 서흥2길 56, 4동 503호(서흥남동 고려타운1차아파트)				
71	학당리	1757	구	2389	86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2	학당리	1153-1	전	618	42	김*자	군산시 서흥2길 56				
73	학당리	1759	도	1405	22	국(농림축산 식품부)					
74	학당리	1154	답	4417	398	최*자	회현면 학당리				
75	학당리	1760	도	685	673	국(농림축산 식품부)					
76	학당리	1761	구	1199	34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 동487				
77	학당리	1096-1	답	3931	107	최*자	회현면 학당리				
78	학당리	1095-2	답	1769	267	신*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79	학당리	1071-1	대	628	24	이*열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80	학당리	1093-7	전	552	214	신*	회현면 학당리				
81	학당리	1073-2	도	20	2	신*선	회현면 학당리				
82	학당리	1093-6	장	1230	19	신*	회현면 학당리				
83	학당리	1093-2	전	439	220	신*	회현면 학당리				
84	학당리	1093-4	도	102	102	신*태	군산시 오룡동				
85	학당리	1093-5	도	40	31						
86	학당리	1093-3	도	10	10	신*태	군산시 오룡동				
87	학당리	1093-1	도	66	63	국 (농림수산부)					
88	학당리	1092-1	도	288	12	국 (농림수산부)					
89	학당리	1074-3	도	86	46	신*철	회현면 학당리				
90	학당리	1074-2	도	40	34	신*철	회현면 학당리				

연번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1	학당리	1058-1	창	2873	16	신*섭	회현면 학당리	회현농업협동 조합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63	근저당권설정	
92	학당리	1075-3	도	112	113	신*섭	회현면 학당리				
93	학당리	1057-8	도	846	50						
94	학당리	1075-2	도	129	48	국 (농수산부)					
95	학당리	1171-1	전	89	63	신*섭	회현면 학당리				
96	학당리	1171-2	도	36	36	신*섭	회현면 학당리				
97	학당리	1172-3	도	26	23	군산시					
98	학당리	1185	대	400	108	신*섭	회현면 학당리				
99	학당리	1185-4	도	3	3	신*식	회현면 학당리				
100	학당리	1178-3	대	552	8	신*섭	회현면 학당리				
101	학당리	1178-4	도	53	53	신*섭	회현면 학당리				
102	학당리	1185-2	대	671	34	신*오	군산시 회현면 원학당길				
103	학당리	1185-5	도	53	23	신*오	군산시 회현면 원학당길				
104	학당리	1185-6	대	93	2	신*오	군산시 회현면 원학당길				
105	학당리	1179-2	도	245	245	군산시					
106	학당리	1181-1	전	169	72	신*섭	익산시 인북로				
107	학당리	1179-1	전	1917	511	신*섭	회현면 학당리				
108	학당리	1180-1	도	36	17	신*섭	회현면 학당리				
109	학당리	1182-2	도	20	2	신*철	회현면 학당리				
110	학당리	1182-1	대	638	5	신*섭	회현면 학당리				
111	학당리	874	전	321	173	신*선	군산시 회현면 원학당길				
112	학당리	872-2	전	140	28	신*선	군산시 회현면 원학당길				

연번	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3	학당리	875-1	대	330	37	최*염	군산시 나운동				
114	학당리	872-1	전	192	61	평산신씨제정 공파학당리 소종중	회현면 학당리				
115	학당리	872	전	1493	190	이*한	서울 종로구 송인동				
116	학당리	875	전	1399	107	최*염	군산시 나운동				
117	학당리	876	답	1825	233	신*순	군산시 대명4길 9				
118	학당리	877-1	답	364	197	이*한	서울 종로구 송인동				
119	학당리	877-2	도	10	8	신*섭	익산시 인북로				
120	학당리	878-2	도	53	1	신*순	전북 군산시 대명4길 9				
121	학당리	1666	답	771	3	신*수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타타대우상용차 신용협동조합	군산시 동장산로 172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122	학당리	1755	구	38	36	(농림축산 식품부)					
123	학당리	1756	도	46	46	국(농림축산 식품부)					
124	학당리	1667	답	857	33	신*용	군산시 미룡동 59-59 은파리젠시빌파크				
125	학당리	1758	도	1640	93	국(농림축산 식품부)					

의 견 서

『 회현 리도 212,213호 도로확포장공사 』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전라북도 군산시장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1-197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9,소로3-874)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미룡동 62-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59, 소로3-874)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10월 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미룡동 62-4번지 외 2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59,소로3-874)사업

2) 명 칭 : 미룡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1) 중로 2-59 : L=214m, B=4.0m

2) 소로 1-475 : L=63m, B=7.0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중앙동2가)

2) 사업시행자 성명 : (주)제일건설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09.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중로2-59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미룡동	62	4	대	713	96	최수용	군산시 미제길 66-9				
2	미룡동	62	0	대	323	43	김형석	군산시 용둔길 1-16				
3	미룡동	108	2	대	482	55	김요경	군산시 미룡동 108-3				
4	미룡동	108	3	도	391	30	김요경, 김혜숙	군산시 용둔길 19-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37-102				
5	미룡동	108	4	전	7	6	김태련	군산시 미룡동 81				
6	미룡동	109	1	도	233	59	김영석	군산시 미룡동 130-1				
7	미룡동	109	2	전	63	8	김영석	군산시 미룡동 130-1				
8	미룡동	110	0	전	49	31	김영석	군산시 미룡동 130-1				
9	미룡동	120	1	전	44	4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10	미룡동	120	5	대	37	35	박미경, 박미자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39, 108동 1103호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100, 213동 1001호				
11	미룡동	121	2	대	223	1	박미경, 박미자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39, 108동 1103호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100, 213동 1001호				
12	미룡동	121	0	전	1,210	3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13	미룡동	122	0	전	257	105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14	미룡동	123	1	도	178	54	김춘경	군산시 미룡동 124				
15	미룡동	123	2	전	23	14	김춘경	군산시 미룡동 124				
16	미룡동	123	3	임	9	8	김춘경	군산시 미룡동 124				
17	미룡동	산242	14	임	3,051	19	유재옥	군산시 대명동 138-216				
18	미룡동	산246	3	전	468	44	박미경, 박미자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39, 108동 1103호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100, 213동 1001호				
19	미룡동	106	2	도	15	10	기획재정부					
20	미룡동	834	23	도	2,273	11	국토교통부					
21	미룡동	106	11	도	390	1	군산시					
22	미룡동	62	3	도	12	12	군산시					
계	22필지				10,451	721						

○ 소로3-874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미룡동	108	3	대	391	179	김요경, 김혜숙	군산시 용둔길 19-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37-102				
2	미룡동	126	2	전	1,567	31	김재오	군산시 미룡동 125				
3	미룡동	129	0	전	387	153	유순덕	군산시 용둔길 19-7				
4	미룡동	131	2	전	426	56	김왕기	군산시 미룡동 132				
5	미룡동	106	2	전	15	5	기획재정부					
6	미룡동	130	3	대	75	22	기획재정부					
7	미룡동	130	4	대	18	18	기획재정부					
8	미룡동	131	5	전	21	21	기획재정부					
9	미룡동	834	23	도	2,273	18	국토교통부					
계	9필지				5,173	503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1-13호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5.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나. 위치 : 군산시 성산면 둔덕, 고봉, 도암 여방리 일원
- 다. 사업시행 : 하수처리장 1기(Q=1,000m³/일), 오수관로 L=40.6Km, 배수설비 932가구
- 라. 사업기간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일 ~ 2024년
- 마.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하수과, 군산시 시청로 17)

2. 보상대상 토지 : 붙임 참조 및 열람장소에 비치

3. 토지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1. 10. 5. ~ 2021. 10. 20.

나. 열람장소 : 군산시 하수과 하수계획계 (☎063-454-5462)

다. 이의신청 : 토지·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후 2021. 11월 이후부터 보상협의예정

나. 보상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3인(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보상금지급→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보상금 공탁

라.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마.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1) 추천요건 :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2) 추천기한 :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3) 추천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바. 보상금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협의계약 체결 후 현금으로 계좌입금 지급

5. 기타사항

- 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나. 편입토지상에 소재하는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합니다.
- 다.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은 추후 지적측량, 계획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마.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 편입토지 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성산면 고봉리	355-6	답	24	24	강*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 지상권	
2		346-19	답	2,332	2,332	강*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 지상권	
3		345-15	답	1,607	1,607	김*정 외 2인	군산시 신평동. 나운동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 지상권	
4		345-14	답	1,360	1,360	강*옥	군산시 성산면	한국전력 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 지상권	
5		344-29	답	1,398	1,398	군산시	-	-	-	-	
6		344-11	답	113	113	군산시	-	-	-	-	

